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화재예방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소방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80”을 “278”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5”를 “233”으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229”를 “22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77”을 “576”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69”를 “468”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67”을 “466”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과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4]

소방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4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기획조정관 1개 과	3명
2. 장비기술국	1명
3. 119대응국 1개 과	6명
4. 화재예방국 1개 과	4명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280</u>	<u>278</u>	-2
소방공무원 계	<u>235</u>	<u>233</u>	-2
·	·	·	
·	·	·	
소방준감 이하	<u>229</u>	<u>227</u>	-2
·	·	·	
·	·	·	

[별표 3]

소방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77</u>	<u>576</u>	-1
소방공무원 계	<u>469</u>	<u>468</u>	-1
·	·	·	
소방준감 이하	<u>467</u>	<u>466</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90